경제혁신 3년의 혁신, 3개년 계획 30년의 성장

함께하는 FTA

September 2016 vol.52

한·중남미 FTA
중남미 지역의 경제 판도
한·중남미 FTA 성과와 전망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한중FTA 활용, 138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38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MOTIE
한국무역협회 KITA
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팀 이헌배 팀장

시스템 확충과 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발효된 FTA는 15건에 이르며 작년 12월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80% 이상 증가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FTA 초기에는 발급일이 2일 이상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서울의 경우 익일발급 체제가 정착되었다. 지난 10년 간 이러한 FTA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공헌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이다.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는 전 세계 130여 개국을 망라하는 국제상업회의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ATA 까르네(무관세임시통관증서) 발급 및 각종 무역서류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전국 71개 지역 상의, 지역별 세관과 함께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2006년부터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무역인증시스템과 콜센터, 전문 관계사로 구성된 FTA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상의 직원과 기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인증서비스센터의 이헌배 팀장은 이공계를 전공한 후 전자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공익적인 국제협력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바코드, 전자문서 등 유통물류 국제표준을 보급·관리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GS1 Korea)에 입사했다. 이후 국제본부 국제통상팀을 거쳐 작년 4월부터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며 팀원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관세청과 협력해 한·중 양국 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시행하고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전국순회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관세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이미 무역인증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담당자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 횟수를 늘려 발급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헌배 팀장은 마지막으로 서비스 기관으로서 고객 응대의 어려움과 협조를 당부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과 발급은 100%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전화문의나 방문 시 거친 언사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부 고객들 때문에 업무 담당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편입니다. 서비스 기관으로서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들도 이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조금 더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

Contents

September 2016 vol.52

COVER STORY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비준 완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되었다.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6개국 그리고 에콰도르,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남미 지역의 경제 판도를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중남미 FTA 진행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6년 9월 1일(통권 52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01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팀 이헌배 팀장

Issue Focus

04 한·중미 FTA 협상 추진 현황과 시사점

06 Global FTA News

08 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 30개 발표

FTA Cartoon

10 아메리카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다!
안종만

Cover Story

한·중남미 FTA

12 중남미 지역의 경제 판도
김원호(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14 한·중남미 FTA 성과와 전망
하상섭(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Special Report

18 FTA & 〈함께하는FTA〉 중간 진단

20 글로벌 강국 인도 집중 분석

FTA & Company

24 2016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이오나노켐(대상)

FTA Study

26 대만의 WTO 가입 비하인드 스토리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28 실전 품목분류: ㉒무인항공기 드론(Drone)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30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국내화장품, 중국 내수시장서 새로운 과제 직면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⑯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저작권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34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③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36 FTA 사후검증팁: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⑧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Art & Culture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㉒혁명의 시대

FTA News

42 RCEP 제14차 공식협상 개최 등

FTA Square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김유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지난 8월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한·중미 FTA 5차 협상이 열려 주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미 FTA 협상 추진 현황과 시사점

중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및 투자 진출 확대

지난 2015년 9월 1차 협상을 시작한 한·중미 FTA 협상이 지난 8월 5차 협상을 맞아 서울에서 열렸다. 일명 SIECA로 불리는 중미 6개국은 중남미 지역 내 인구 4위, GDP 규모 8위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다. 현재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 인하는 향후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글로벌 시장, 중미에 대해 알아보자.

중미 6개국 경제 및 교역 현황

중미 6개국은 중남미 지역 내 인구 4위, GDP 규모 8위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다. 2015년 기준, 총 GDP 2,202.2억 달러, 인구 4,620만 명이며, 1인당 GDP는 6개국 평균 약 5,793 달러 수준이다. GDP는 칠레(2400.4억 달러), 페루(1799.1억 달러) 등과 비슷한 수준, 인구는 콜롬비아(48.2백만 명), 아르헨티나(43.0백만 명) 수준이다.

	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인구(백만 명)
과테말라	632.2	3,886.4	16.3
엘살바도르	256.5	4,022.5	6.4
온두라스	199.4	2,364.6	8.4
니카라과	123.2	1,965.0	6.3
코스타리카	516.2	10,671.6	4.8
파나마	474.7	11,849.7	4.0
SIECA	2,202.2	5,793.3	46.2

출처 IMF 2015년 10월 기준 예

한·중미 6개국 교역현황

한·중미 6개국 간 교역규모는 연간 40~50억 달러 수준(2015년 41억 달러)으로, 對파나마 교역비중이 64.7%를 차지한다. 파나마의 경우 편의국적선에 따른 선박 수출입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교역규모는 연간 5~6억 달러 수준이다.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2014년			2015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출	수입	총교역
과테말라	320	321	641	398	162	560
엘살바도르	139	58	197	129	14	143
온두라스	115	51	166	117	55	172
니카라과	182	22	204	149	13	162
코스타리카	243	291	534	245	150	395
중미공동시장	999	743	1,742	1,038	394	1,432
파나마	2,765	495	3,260	2,230	391	2,621
중미 6개국	3,764	1,238	5,002	3,268	785	4,053

우리나라는 중미 6개국에 대해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SIECA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파나마이고,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전기기기, 철강제품이다.

파나마 파나마는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로 선박을 제외하면 對파나마 수출은 실질적으로 연간 4.6억 달러 수준으로 다른 중미 국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

과테말라 우리 섬유·의류기업들의 진출로 편직물, 면사 등 섬유제품 수출 비중이 높고, 2015년 상반기에는 철강 및 석유제품의 수출 호조로 對과테말라 수출 소폭 증가

코스타리카 승용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對코스타리카 수출이 3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후 승용차, 전자기기 등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출이 주춤하며 다시 2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올해 상반기 수출은 철강 제품 수출 감소로 11.6% 감소

엘살바도르 지난해 엘살바도르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對엘살바도르 수출이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임

니카라과 주력 수출품인 편물과 승용차 수출의 감소로 지난해 對니카라과 수출 감소

온두라스 對온두라스 수출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이는 온두라스의 수입수요가 3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소폭 증가에 그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

우리나라의 對중미 수입 비중은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순으로 높고, 주로 금속 폐기물(waste) 및 스크랩, 커피, 파인애플, 새우 등 1차 산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파나마 금속 스크랩, 새우, 커피 등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제품의 2014년 對파나마 수입실적은 1,650만 달러 규모임. 對파나마 수입실적에는 파나마産 선박으로 등록(편의치적)된 선박 수입 및 파나마 운하를 거쳐 수입되는 에너지(LPG, 경유, 중유 등)가 포함되어 있음

과테말라 2013~2014년 사탕수수 수입선이 태국에서 중남미로 전환되면서 對과테말라 수입이 증가했으나, 2015년 상반기에 다시 태국산 수입이 늘어나며 과테말라産 수입이 감소했고, 금속 폐기물(waste) 및 스크랩 수입 역시 감소해 對과테말라 전체 수입은 감소

코스타리카 반도체 및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하여 관련 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음. 2015년 상반기는 컴퓨터 부품, 금속 웨이스트 및 스크랩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對 코스타리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6% 감소

온두라스 對온두라스 수입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으나 2012~2013년 커피 수입수요가 주춤했고, 금속 웨이스트 및 스크랩의 수입 급감으로 對온두라스 수입 감소

니카라과 금속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주요 제품과 새우류 수입이 크게 줄면서 최근 對니카라과 수입 감소세 지속

엘살바도르 사탕수수 수입의 급증으로 2014년 對엘살바도르 수입은 크게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사탕수수 수입선의 전환(중남미産→태국産), 금속 스크랩 및 웨이스트 수입이 줄면서 對엘살바도르 수입 감소

한·중미 FTA 5차 협상 개최

한국과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열렸다.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중미는 헤수스 베르무데스(Jesus Bermudez)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7월까지 본 협상 4회, 회기간 회의 2회를 포함 총 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상 가속화를 위해 국가별 관심도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자동차, 섬유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식재산권 및 공정한 시장 경쟁 규범 등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대(對)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중미 교역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이 진출해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이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UK]

브렉시트, 영국의 대외무역 재정립 어떻게 될까

브렉시트 결정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영국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과 관련해 메이 신임총리는 연내에는 조약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본 조약 50조란 탈퇴 예정국가 정부의 요청과 EU 집행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국의 탈퇴 결정 후 2년 동안 EU와 탈퇴의 세부조건 및 향후 관계 정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약이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신임 브렉시트 장관도 2018년 1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언급해, 영국의 대외무역 관계 재정립의 가장 큰 부분인 EU와의 관계 재정립 협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간 경제모델 예상

영국과 EU 간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모델은 크게 EEA 회원국 가입 모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모델, 무역협정 비 체결 모델 3가지로 보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 3가지 모델 모두 제3국과의 독자적인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지만, 협상의 주요 쟁점인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 보장과 EU회원국으로부터의 영국 내 이주민 통제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EA 회원국 가입모델의 경우 영국이 국경통제권을 갖기 어렵고, 무역협정 비체결 모델의 경우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EU단일시장 접근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관계

영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EU국가가 영국 총 수출입의 약 50.3%를 차지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11.4%), 중국(8.15%) 순임. 따라서 영국은 미국,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외 인도와 호주 등 연방국가의 선제적 자유무역협상 체결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2013년 2월부터 범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를 주요 품목으로 약 73억90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중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 WTO 다자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자유무역협정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는 현행 EU 실행세율인 10% 내외의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영국 시장에서 특히 제3국과 경쟁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영국과 EU 간 향후 탈퇴협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한편, 브렉시트 영향의 유무 및 정도를 충분히 파악해 가격정책 변동, 거래선 대체, 거점 이전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U]

일본, 필리핀과의 FTA 추진

EU-필리핀 FTA 2차 협상 오는 12월 개최 예정

EU-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12월 둘째 주에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1차 협상에서 양측은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12월의 2차 협상에서는 시장 개방 양허안 교환 및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측

의 양허안에는 상품개방, 위생검역, 원산지규정,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보조금 및 국영기업 관련 경쟁정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EU의 투자법원제도와 관련하여 필리핀 측은 상설 법원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일본 간 FTA 연내 타결 위해 최상의 노력 기울일 것

집행위 세실리아 맘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의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EU-일본 간 FTA 협정의 연내 타결을 위해 최상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트롬 집행위원은 속도보다는 협정의 내용이 중요하며 EU와 일본이 연내 협정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간 FTA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동 협정의 체결로 인해 EU의 對일본 수출은 22.6~32.7%, 일본의 對EU 수출은 17.1~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 협정의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EU 이사회와 EU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집행위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과의 FTA 협상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본의 포경 문제에 대해서는 동 협정이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및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이 동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① 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 30개 발표

유럽(EU) 여행자 구매물품, 한·EU FTA 적용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27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요 규제개혁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입신고 잘못했을 시 인터넷으로 정정 가능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천 달러 초과 6천 유로 이하[1]의 유럽(EU)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으나,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를 허용한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 시에도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 수입 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된다.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 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으로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위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세정지원 정책인 CARE-Plan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된다.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50% 범위까지 상향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보세구역의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여 관세 행정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미한 과실에도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누적 시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개선하여, 경미한 과실에 대한 주의처분 제도 도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부직원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총 11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후 약 한 달간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30건의 추진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추진과제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향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미화 1천 달러 이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증빙서류 불필요)
6천유로 초과: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필요

② FTA 차이나 협력관,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큰 힘

차이나 협력관, 중국 정부로부터도 호응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한·중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관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협정 적용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 시 예상되는 통관애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FTA와 통관업무 경력 20년이 넘는 관세 분야 베테랑이자, 중국어에도 능통한 차이나 협력관(4급 임창환 톈진, 5급 송기찬 다롄)을 선발하여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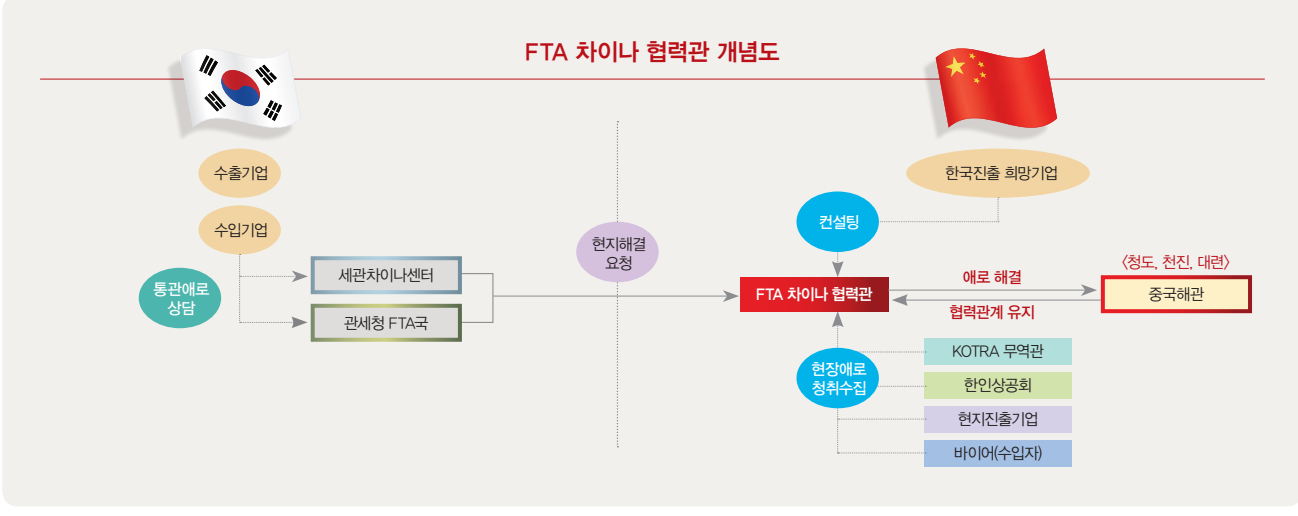

중국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사

관세청은 차이나 협력관들이 파견 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42억 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중소기업 N社는 2016년 2월 2억 4천만원 상당을 수출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톈진공항해관에 제출했지만 중국 측 담당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아무런 문양이 없어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협력관은 해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으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한·중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하여 통관 보류되었던 화물을 통관시킨 것은 물론 보통 환급받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과거 수출물품에 대한 담보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국 해관 입장에서도 차이나 협력관은 고마운 존재다. 중국 통관 제도를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에 잘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최된 〈톈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협력관의 노력으로 양국의 세관당국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포럼에 참여한 업체들은 양국의 FTA 통관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톈진해관은 한·중 FTA 활용과 기업소통을 위한 협력관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협력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천진해관에서는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는 사본제출도 허용해주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관세청은 차이나 협력관이 파견된 톈진과 다롄 말고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관세관이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며, 가까운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애로를 접수하면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향후 교역량 및 통관 애로 건이 많은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나 협력관 파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툰 안종만

아메리카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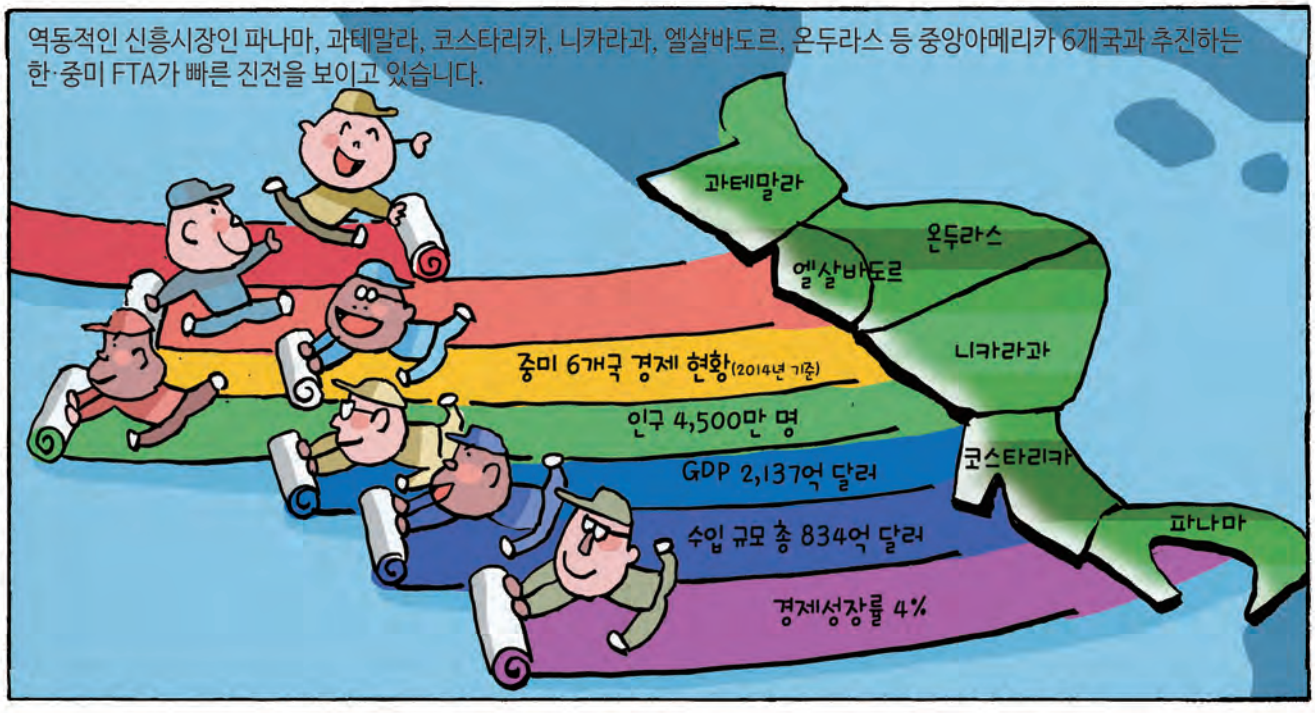

한·중남미 FTA

중남미 지역의 경제 판도
한·중남미 FTA 성과와 전망

글 김원호(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중남미 지역의 경제 판도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흐리고, 멕시코·콜롬비아·페루 맑음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33개국 가운데 이른바 '빅7'이라고 일컫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는 지역 전체 경제규모의 90% 가까이 차지한다. 이중 우리 기업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시장을 간단히 경제규모 순으로만 답할 순 없다.[1] 각 나라마다 처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남미 경제 판도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중남미 진출 전략을 세워보자.

1
역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과 칠레는 이른바 '중소득 덫 (middle-income trap)'에 빠져 대통령 탄핵 또는 지지율 추락 등 정치사회적 후유증을 심하게 앓는 중이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경제혼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의 병폐가 식량난으로 번지는 초유의 위기에 들어섰고, 비록 아르헨티나에는 최근 우파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좌파가 의회에서 버티면서 절실한 시장 개혁을 저지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199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사회적 비용이 커지자 많은 국가에서 좌파정권이 출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들 좌파정부들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경제가 광물, 농·축산물, 에너지 자원 등 원자재 수출 기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각국의 재정수입이 늘어나 좌파정부의 팽창적 재정정책도 넉넉히 유지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중남미지역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5%에 달했다. 이중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1.3%를 기록한 2009년 실적을 제외하면 연평균 5.3%로써 유례없는 고성장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남미 경제는 19세기 말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고성장을 경험한 바 있었다. 고성장 뒤에 다시 경제위기가 찾아왔던 아픈 경험을 되새겨 보았다면 중남미 국가들은 호황기에 산업화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전념해야했다. 그러나 중국 등지로부터의 원자재 수요폭발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원자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히려 탈산업화 즉, 산업공동화로 치달았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부문에 대한 관심은 더디게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 2012년 후반기 중국경제가 둔화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자 중남미 경제의 대외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왔다. 특히 유가의 하락은 멕시코, 베네수

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등 석유수출국에, 대두가격 하락은 아르헨티나에, 구리가격 하락은 칠레와 페루에 직격탄이다. 중남미 지역경제 성장률은 2012년 2.8%, 2013년 2.9%로 둔화되더니 2014년 0.9%, 2015년 −0.5%, 2016년 전망치 −0.8%로 곤두박질 쳐왔다.

태평양동맹 4국과 남미공동시장 5국의 명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국가별로 차별화가 뚜렷해진 점이다. 21세기 들어 원자재가격이 치솟아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에도 사회적 고통을 이겨내며 1990년대의 개혁을 지속해나간 국가들이 있었다. 이 국가들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로써 2012년 이른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맺었다. 이들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경제개방 가속화만이 살 길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미약하나마 남아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칠레, 페루, 콜롬비아인 점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중 일찍이 1970년대부터 개방을 추진해오면서 급성장한 '라틴 용(Latin dragon)' 칠레는 남미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2015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남미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1만5천 달러에 이르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최근에는 고성장 후유증으로서 분배요구가 높아지면서 세제, 노동, 교육, 연금, 의료보험 개혁 등 경제사회정책 과제에 직면해 경제 활력을 잃은 편이다.

흥미롭게도 태평양동맹 4개국은 지리적으로 태평양을 끼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와 반대로 대서양을 끼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내륙국) 등 5개국이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미국 및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국내경제정책에서도 분배중심의 정책을 펴왔다. 최근 들어선 아르헨티나 마크리 정부나 브라질 과도정부가 어떤 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볼 일이지만 최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발표한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브라질 −3.5%, 아르헨티나 −1.5%, 베네수엘라 −8.0%, 우루과이 0.5%, 파라과이 2.8%로 매우 비관적이다. 경기둔화 즉 자본흐름의 둔화는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 및 수요 창출이라는 좌파정책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재정긴축 또는 공공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중미 전망 밝아

결국 중남미 주요국 가운데 오늘날 역동성이 살아있는 국가로 주목할 나라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로 남는다. 멕시코는 2012년 12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일부 기업의 시장독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체제를 종식시키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른바 1990년대에 이은 '제2의 시장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세고 이전 정부가 추진한 '마약전쟁'의 여파로 사회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현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멕시코 제조업계의 반대로 태평양동맹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멕시코와 FTA를 맺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이래 교착상태에 빠진 FTA 협상을 재개할 돌파구를 2018년 11월로 만료되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찾아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페루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26년간 후지모리, 톨레도, 가르시아, 우말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당파를 달리하는 대통령들이 오갔지만 개방성향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펼쳐온 데다 최근 경제관료 출신 쿠친스키가 대통령에 집권하면서 성장세 지속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지난 6월 23일 주력 반군인 콜롬비아혁명군(FARC)과의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등 반세기만에 평화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10년간 외국인투자가 급증해왔다. 오늘날 콜롬비아는 세계 주요기업들의 선점각축장으로 변모했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치고 사실상 중남미지역 제3위 경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평양동맹 4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멕시코 2.3%, 콜롬비아 2.7%, 칠레 1.6%, 페루 3.9%로 남미공동시장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18개 중남미국가 순위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순으로 이들 4개국이 상위를 독차지하고 있다. 다음 순위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비교적 경제규모는 작으나 역시 개방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미지역 국가들이다. ECLAC이 발표한 이들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역시 파나마 5.9%, 코스타리카 4.3%, 과테말라 3.5%, 엘살바도르 2.3%로 높은 편이다. 이들과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FTA 협상이 기대되는 것도 이 점 때문이다.

글 하상섭(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남미 FTA 성과와 전망

칠레,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비준 완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한·중남미 FTA를 견인하고 있는 3개국은 현재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더불어,
중남미–태평양 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을
리드하는 국가들로서 성장 잠재력이 더욱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가 다자 협정의 성격을 지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칠레, 페루는 이미 회원국이며 콜롬비아는 가입 희망국)'
가입을 희망한다면 실질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 대상국들임은 물론
긍정적 역할을 해 줄 '지렛대' 국가들이다.[1]

우리나라는 현재 이들 개별 국가들과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FTA를 맺어 오고 있으며 2004년 4월 칠레와, 2011년 8월 페루 그리고 올해 2016년 7월에는 콜롬비아까지 자유무역 관계를 확대 및 심화 발전시켜 오고 있다. 자유무역 관계를 시간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장기), 5년(중기) 이상 그리고 원년(단기)이라는 관계로 각각 경험·발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중남미–태평양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상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인 칠레를 필두(남미 최남단)로 점차 북상해 이웃국가인 페루, 콜롬비아를 거쳐 이제는 에콰도르, 중앙아메리카(SICA) 그리고 멕시코(협상 중)를 향해서 발 빠르게 확장 순항 중에 있다. 이러한 대중남미 자유무역협정 움직임을 중간 점검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몇 중요 시사점이 있다.

한·칠레 FTA 12년

지난 10년 동안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한·칠레 양국의 교역량은 발효 전 2003년 대비 2013년 무려 4.5배(액수로 환산하면, 16억에서 약 71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수출이 약 25억 달러로 5배 정도 그리고 수입은 47억 달러로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OTRA 2013). 이를 통한 우리나라 상품들의 칠레시장 선점 효과도 승용차, 디젤용 기타차량, 폴리에틸렌, 일반화물차, 휴대폰, 경유 등의 상품 부문에서 우위를 보여 왔다. 이에 더하여 규모가 큰 건설 및 에너지 플랜트 사업들에서 많은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는 비산유국이면서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진 국가 특징 상 전력공급이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안보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발전 목표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FTA를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강화해 많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있다.

특히 FTA로 인해 건설 중장비 관세 인하 혜택으로 우리나라 건설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경우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월등한 투자 진출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우리나라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들인 포스코(POSCO), SK, 남부발전 등이 참여한 (석탄/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대의 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칠레 차카오 대교(Puente Chacao) 건설 등의 대형 공공사업 진출은 한·칠레 FTA의 가장 좋

1 태평양동맹 4개국의 인구는 2억1천500만 명, GDP 합계는 중남미 전체 35%인 약 1조7천억 달러의 시장으로써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거대 시장들에 이어 세계 8위 규모의 시장. 유영식 2013. "태평양동맹, 중남미지역의 새로운 경제블록으로 부상", 트랜스라틴 24호 (2013년 6월) 인용.

우리나라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들이 참여한 칠레의 대형 공공사업은 한·칠레 FTA의 좋은 사례로 손꼽힌다.

은 효과 사례들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정 분야 진출도 상당히 눈에 띄지만 한·칠레 FTA 수혜 품목은 역시 자동차였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칠레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분야는 자동차로 일반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 부품(타이어 등)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는 칠레 자동차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FTA 10년 2014년 기준). 이외에도,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 구리 전선과 케이블 제품 등도 칠레 광업과 에너지 산업의 투자 개발 증가로 인해 수출상품 증가로 반사이익을 얻은 경험도 있다.

한·칠레 FTA 12년과 더불어 이 분야 정책 전문가들의 요청은 명확하다. 관계의 '고도화' 및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이상의 관계에서 살펴본 한·칠레 FTA의 역사적 관계 재정립 그리고 무역 관계에서 수출입 물량 증대로 상호 안정감 확보, 한국의 FTA를 통한 일본 및 중국산 제품들과 경쟁해 비교우위 확보, 칠레를 거점으로 한 여타 다른 남미 국가들의 동반 진출 가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호 윈–윈 전략을 상기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고도화 전략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확대' 와 '협력 분야 다변화'를 통한 FTA 고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양국 최대 수출품들 중에 광물이 80% 이상, 자동차가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협력분야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면 협력 분야 다변화,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ICT, 원격의료, 우주과학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다변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2015년 박근혜 대통령 순방 시 협력 아젠다 제시).

특히 현재 바첼렛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중 하나인 전력난 극복을 위한 각종 전력원 개발(신재생에너지) 및 송배전망 개선,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노선 확대 등의 공공사업 참여 및 사회인프라(SOC) 투자개발 차원에서 도로개선 프로젝트 등에 많은 협력과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남미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을 경험한 국가로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방화/무역다각화를 추진, 전 세계 6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가장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펴 오고 있다. 지난 12년의 한·칠레 자유무역 관계를 더욱 다변화 혹은 고도화해, 여타 남미, 북미, EU 진출을 위한 '허브'로서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의 TPP 진출을 위한 협력국가로서, 오늘날 칠레는 그 오래된 역사성과 더불어 중요성은 배가된다.

자원 FTA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한·페루 FTA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페루 FTA 5년

2011년 8월, 한·페루 FTA가 발효된 후 5년이 막 경과했다. 칠레에 비해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남미 국가들 중 칠레에 이어 2번째 FTA 국가로 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더욱 확장된 계기였다. 특히 2011년 발효 시점을 비교해 보면, 중국보다는 다소 늦었지만(2010년 3월), 일본(2012년 3월 발효)보다는 다소 빠른 무역관계 설정으로 페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몇몇 특정 상품들의 선점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한·페루 FTA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은 자원 FTA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페루는 광물과 에너지 부국이다.[2] 예를 들어 페루 경제는 에너지 및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무려 8.8% 성장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우말라 좌파정부가 집권했지만 국내 시장을 개방하여 광물개발, 사회인프라(SOC) 건설,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등의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동북아 국가들인 한·중·일 3개국은 물론 북미의 미국(2009년 2월)과 남미에서는 이웃국가인 칠레(2009년 3월) 등과 FTA를 발효했다. 일찌감치 가입한 안데스공동체(CAN: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5개국이 1969년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체) 그리고 최근의 태평양동맹(PA, 2012년)의 정회원국인 페루는 무역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03년), 멕시코(2008년), 쿠바 등과 경제보완협정(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FTA보다 낮은 수준의 양자협정)을 체결하며 글로벌 수준의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페루의 네트워크 활용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현재 페루는 남미 국가 중 칠레, 멕시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년 창립이후 현재 21개 회원국 참여 중이며, 중남미 지역에서는 1993년 멕시코를 필두로 1994년 칠레 그리고 페루는 1998년 가입했으며 콜롬비아는 현재 가입 요청 중)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페루, 칠레만 참여 중이며 콜롬비아는 가입 요청 중) 회원국으로 대아시아 교역에 적극적인 국가라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 2008년 11월 이미 수도 리마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2016년 11월 의장국으로서 다시 한 번 태평양지역 회원국들을 리마(lima)로 불러 회원국 간 협력 의제를 리드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1989년 원년 가입국이며, 2005년 부산 APEC 개최함). 양국의 FTA 체결에 대한 자신감은 교역 규모가 1990년 1억 달러 기준에서 2010년 약 20억 달러로 20배 증가하면서 나왔다. KOTRA의 분석에 의하면 동기간에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출이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약 94배 증가(1990년 1천 달러에서 2010년 9억 4천만 달러)했다고 분석할 정도로 급성장한 덕을 보았다(수입은 동광, 금속광물, 아연광 등 광물자원이 주류). 5년을 분기점으로 보면 페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커졌고 특히 자동차, TV 등에서의 일본과 중국 제품들과 경쟁력은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콜롬비아 FTA 비준 2016년 원년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2016년 7월 15일 드디어 발효되었다. 중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중견국가이자(인구규모 3위) 대외적으로 태평양동맹의 한 축인 콜롬비아와 FTA 발효는 향후 정치경제 및 외교 관계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트라(KOTRA)는 향후 한·콜롬비아 FTA "수출유망 품목으로 승용차(콜롬비아의 FTA 체결국인 미국, 독일, 멕시코 대비 경쟁열위 회복), 타이어(5년 내 관

2
페루는 동(2위), 금(6위), 은(1위), 아연(2위), 주석(3위), 등의 생산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남미의 자원부국이다. 물론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한정하면 은, 아연, 주석, 납, 금의 생산량은 1위였다(2009년 통계).

세 철폐로 중국,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 우위), 비알코올음료(연평균 30% 이상 수입증가, 건강식품 인식 확산)를 선정하고, 정부정책 및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시장 진출을 권고"하는가 하면, 콜롬비아 측에서는 "커피 원두, 바이오연료 등 농산업 협력, 도로, 항공,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풍력, 태양열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콜롬비아 국가발전 전략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 대한 투자 진출을 희망해오고 있다. 비준 이후 양국의 FTA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의 전망과 분석은 이처럼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기존의 한·칠레, 한·페루 FTA의 소중한 경험은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한 협상과 미래 방향 설정에서 더욱 전문화, 전략화되었다는 평가이다. 콜롬비아가 지닌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이에 알맞은 협상 전략과 과정(예를 들어 비준 과정에서 상대국의 비준 지연 상황 충분히 수용)이 적용되었으며 향후 협력 분야도 콜롬비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양국 간의 무역 증대를 위한 교역품목 다각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협력 확대 등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교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윈-윈 FTA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과 콜롬비아는 태평양 유역의 다양한 공동시장 진출의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한·콜롬비아 FTA가 시발점이다. 콜롬비아의 태평양-아시아 시장 진출의 시험대는 우리나라이며, 태평양동맹(PA) 회원국으로서 향후 APEC과 TPP 진출에 대한 지역 및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유럽(EU)과 미국(USA) 중심의 무역 전략에서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을 향해서 무역선 다각화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국이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한 경제협력 관계 발전 연장선에서 보기보다는 그동안 양국이 다양한 관계(외교 등)에서 쌓아 온 상호 신뢰도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계로 추정해 보면 콜롬비아의 APEC 가입과 TPP 가입 그리고 우리나라의 향후 TPP 가입에 대한 노력은 양국이 상호 지렛대가 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콜롬비아와의 FTA는 정치·외교에서 다양한 협력 관계가 기대된다.

결론 및 시사점

12년이 지나고 있는 한·칠레, 5년이 지나고 있는 한·페루 그리고 이제 막 발걸음을 디딘 한·콜롬비아 FTA 모두 태평양-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언급했듯이 점차 에콰도르, 중미 그리고 멕시코를 향해 북상을 시도하고 있다. 3개국 모두 남미 경제에서 규모나 경제 발전 속도에서 비교해 보아도 탄탄한 중견국가들이자 자원부국들이다. 특히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와 전통적인 우방국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 투자진출, 인적교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3개국 모두 동일한 자유무역 확대 및 이의 강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각기 다른 방향과 속도로 발전해오고 있는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고도화', '다각화' 혹은 '집중과 선택'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향후 지역적 규모의 FTA(예를 들어 TPP 다자 FTA 참여 등) 전략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들 국가들을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 및 허브 국가들로 인식해 통합적 관계로 발전시켜 전략을 구상하는 지혜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적극 고려한다면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TPP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입 희망) 그리고 멕시코(한·멕시코 FTA 협상 중)와의 상호 역학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대응하는 통합 전략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에서 그리고 다른 시기별로 확대 발전하면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대중남미 FTA에 대한 우리나라 FTA 전략의 다각화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리 김선녀 기자

FTA & 〈함께하는FTA〉 중간 진단

당신에게 FTA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FTA 체결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FTA에 관한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던 〈함께하는FTA〉 역시 지금까지 50권의 책으로 독자들을 만나왔다. 사람들은 FTA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변화와 이슈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평소 FTA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함께하는FTA〉를 만난 소감을 물었다.

"FTA,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뉴스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2012년.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이 때, 처음으로 FTA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접할 수 있었던 FTA와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뿐이었습니다. 갓 20살이던 저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황된 거짓말인지 올바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처음 'FTA'라고 했을 때는 한국과 미국 간의 조약만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함께하는FTA〉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FTA가 마냥 우리나라에 악영향만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갖은 뉴스에서 어려운 용어로 풀어내던 FTA에 대한 사실들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써주어 이해하기도 매우 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자료를 함께 보여주어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불러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 자료들을 통해 단순한 조약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검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FTA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무역'과 'FTA'가 어렵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와 저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연주** 단국대 4

"가볍게 접근해도 괜찮네요!"

FTA라고 하면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통상적인 뜻 외에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해 이해할 의지가 있었다면 각종 포털 사이트나 서적 등 많은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우연히 〈함께하는FTA〉를 읽고 나니 따로 정보를 검색해야한다는 부담감 없이도 슥 넘겨보며 몰랐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나 무역 전공은 아니지만 잡지를 읽으면서 FTA의 현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호 커버스토리에서 주로 다뤄진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 내용을 통해 약간은 생소했던 콜롬비아와 남미 시장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커버스토리 이외에도 브렉시트가 한국과 EU의 FTA에 미치는 영향 등 몰랐던 부분을 깊이 알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FTA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인문학 관련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기에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처럼 꼭 무역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FTA 관련 현황이나 제도 등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잡지를 읽기 전보다 FTA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이다영 동국대 3

"누구나 '함께' FTA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해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는 전제가 깔려야 합의라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요. 이번 콜롬비아와의 FTA도 콜롬비아의 국내 정세 때문에 7년 만에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지형적 위치와 기후부터 그 나라의 정치적인 정세까지 많은 것이 고려되고 합의된 끝에 합의로 이어졌더군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만큼 더 값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동차와 평소 자주 접하는 커피 시장에도 더욱 새로운 활력이 생기기를 기대해봅니다. 〈함께하는FTA〉는 그 이름처럼 누구나 '함께' FTA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사의 어조가 친절하며 단순히 두루뭉술하게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FTA를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경 숙명여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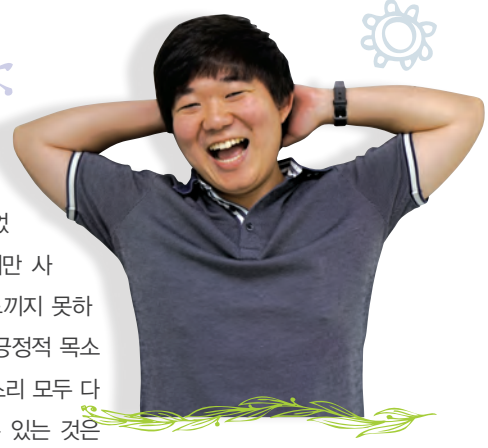

"경제 관련 리포트 준비에 제격!"

중국,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와 FTA가 체결이 되었다는 소식이 해마다 언론을 통해 들려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어떤 효과와 의미를 가지는지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목소리와 국내 산업시장이 피해를 입는다는 부정적 목소리 모두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FTA 체결 이후 질 좋은 수입과자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정도였고요. 다른 사람에게 FTA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갖게 된 건 〈함께하는FTA〉를 접한 후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함께하는FTA〉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데요, 여러 산업이나 기업과 관련한 발표나 리포트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학과는 현업에 아는 선배가 많을수록 학점이 잘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최신 정보를 잘 아는 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글로벌이 주요 키워드인 요즘, FTA는 경영학에서도 핫한 이슈입니다. 보통 기업공시나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전문가에 의해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자료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함께하는FTA〉는 이러한 조사 시간을 단축해 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까지 확보하여 리포트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훈** 연세대 3

"FTA에 대한 관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최근 거제도에서 나고 자라 조선업을 하고 있는 친한 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유럽여행도 다녀오고 계속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형의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찌된 일인 걸까 싶어 자료들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를 만든다는 것은 한국에서만 사용할 상품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선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제적인 무역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그 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조선업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유값의 흐름과 경쟁력을 갖추고 나타나는 타국 제품들 앞에서 탄탄할 것만 같던 조선업의 앞날이 이제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러던 차에 〈함께하는FTA〉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에콰도르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수출품을 많이 살까? 그들과 관계를 맺느라 고생하느니 보다 선진국인 나라와 돈독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함께하는FTA〉를 읽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생각했다가는 자동차 수입쿼터제도나 여타 방어기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조선 산업처럼 휘청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FTA를 체결하는 일들은 여전히 외교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TA를 먼 나라 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형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어려움이 내 가족은 물론 나에게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FTA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유현우** 가톨릭대 3

노동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생산가능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인구 보너스 효과'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동 인구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 증가 자체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경제규모가 증가하더라도 1인당 자본과 소득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훈련을 받은 여성인력 활용도가 낮아 노동의 추가 공급 여력이 충분하며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어우러져 노동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 활용법 → 인도 노동인구의 강점을 활용한 진출 추진

노동 인구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도의 '인구 보너스'를 활용하고 기술인력 및 여성인력 등 인도 노동인구의 강점을 활용한 투자 진출을 계획한다. 또 지역별 및 산업별로 다른 노동인구의 특성을 감안한 투자진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자본

전통적으로 투자율이 낮은 인도에서는 1991년 개혁 이후 외국자본을 비롯한 민간투자 확대가 중요해졌다. 인도의 경제성장은 수출 등 대외적인 요소보다는 소비 및 투자 등 국내요인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본량을 대표하는 국내총자본형성은 인도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인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자본이 부족한 인도는 외국인투자를 통한 자본축적도 매우 중요하다.

자본 활용법 → 자본 투입의 기회 활용

대인도 투자진출에서 선진국은 M&A와 그린필드 방식을 병행하는데 비해 우리 기업은 그린필드 방식의 단독투자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어 M&A를 이용한 진출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서비스 시장에 점진적 진출을 시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부진한 서비스업 진출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생산성

인도경제가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한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TFP)은 1990년대의 1.6%에서 오히려 1.3%로 하락했다. TFP 성장률을 주도한 부문은 서비스와 농업이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제조업의 TFP 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하지만 전 세계의 TFP가 최근 3년 연속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 인도 TFP 증가는 더욱 의미 있는 성과이다. 한편 최근 인도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저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분이며 그 다음으로 시장 서비스 부문으로 나타난다.

생산성 활용법 → 생산성 높은 분야에 진출 집중

인도의 생산성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으로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전략은 부적절하다. IT 및 IT 응용서비스, 수송, 보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등 노동생산성이 높은 시장 서비스를 활용하는 한편 제조업 중에서는 노동집약도가 낮은 분야인 석유화학, 핵연료, 운송기기 등의 노동력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 후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을 가장 먼저 실시해 최소 정부·최대 거버넌스를 목표로 정부 부처 통폐합으로 관료사회 규모는 줄이고 대신 업무 효율화 기재를 전격 도입했다. 또 조세제도 및 납부, 징수 대상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조세 제도 및 납부의 간소화와 징수 대상 완화를 추진했다.

제도 활용법 → 인프라 산업 진출을 위해 인프라 파이낸싱 효율적 활용

현재 인도는 전방위적으로 스마트 100개 도시 건설,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 확장 등의 도시건설 사업은 물론 주택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인도에서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도시개발 수요가 지속·확대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인도측에 제안한 100억 달러의 인프라 파이낸싱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의 경쟁 우위 분야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고,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 설정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경제성장 요인별 분석을 통해 인도의 고속성장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對인도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분석 결과, 노동, 자본의 양적·질적 증가와 생산성의 지속 향상으로 향후에도 인도 경제는 고성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기업은 비용절감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대인도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M&A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조기 정착의 성공률을 높이고 신성장 분야에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시작, 일본의 사례로 본 주안점 분석

한·인도 CEPA 對 일·인도 CEPA

세계 경제를 양분하던 미국과 유럽 사이에 BRICs라는 신흥경제지역이 떠올랐고, 어느덧 이들은 중국과 인도 등을 필두로 세계 경제 최전선에 위치해 전통적 경제장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제 이들과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시킨 인도와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우리와 BRICs 국가 간 최초의 FTA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편, 우리보다 1년 반 정도 늦게 발효된 일·인도 CEPA와 비교하여 개선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6월 18일 한국과 인도 정부는 한·인도 CEP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의 개시를 선언했다. 이는 작년 5월 인도의 모디 총리가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협정의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결과물로, 한·인도 정상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약속을 인도 정부가 지키고자 받아들여 가능했다. 양국은 올해 8월 협상을 시작해 2017년 말까지 CEPA 개선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해 향후 개선협상 과정에서 명확한 목표설정 및 구체적인 개선분야에 대한 고민이 급선무가 되었다.[1]

한·인도 CEPA의 성과와 과제

모름지기 CEPA라 함은 FTA의 한 종류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유무역 이전에 경제통합의 전반적인 포괄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며 시장 개방에 앞서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데 한·인도 CEPA 당시에는 인도 측에서 FTA라는 표현이 야기하는 자국 내 민감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CEPA라는 용어의 사용을 건의했고 이를 한국이 받아들여 최종 명명되었던 바 있다. 실제 인도는 대부분의 FTA에서 CEPA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2] 한국 역시 이후 인도네시아와 양자 FTA를 추진하며 한·인도 CEPA라고 명명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야심차게 출범한 한·인도 CEPA는 발효 초기 우리의 對인도 교역량이 대폭 증가하고, IT전문가 및 석박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인도인이 대규모 국내로 입국하며 CEPA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후, 일본과 인도의 CEPA가 발효되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한·인도 CEPA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발효 5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인도 진출 기업 중에 한·인도 CEPA를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 기업이 고작 7.1%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고, FTA를 체결했음에도 경쟁국 제품에 비해 여전히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훨씬 높은 것이 인도시장 진출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밝혀지면서 CEPA 협정의 존재 자체를 무색하게 하기도 했다. 현재 인도시장은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어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이다. 이에 일본의 對인도 투자 등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인도 CEPA를 한·인도 CEPA와 비교해 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한·인도 CEPA 개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인도 CEPA가 주는 시사점

인도 시장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구조로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일본으로, 각자의 CEPA를 기반으로 인도시장 점유 경쟁은 매우 치열한 경합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방수준으로 보면, 일·인도 CEPA의 인도 측 개방수준은 90%인데 반해 한·인도 CEPA의 개방수준은 85%로 그 차이가 적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85%라는 개방 폭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가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2] 더불어 양허 제외가 약 10%에 불과한 일·인도 CEPA에 비하여 같은 분류의 비율이 약 14.5%에 달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對인도 수출 시에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인도 CEPA 개선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5~0.1%, 후생수준은 6억~12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2 인도는 한국 외에도 캐나다, 스리랑카,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 역시 CEPA라고 명명했다.

3 반면에 개방속도의 측면에서는 한·인도 CEPA의 인도측 즉시관세철폐 비율이 38.4%에 달하는 반면에 일·인도 CEPA는 7.6%에 그쳐, 우리의 인도시장 개방속도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스케줄 비교

자료 외교통상부, 일본 외무성 발표 자료 종합

구분	양허스케줄								
한국→인도	즉시 철폐	E-5	소계	E-8	소계	RED	SEN	누계	양허 제외
	38.4%	14.0%	52.4%	22.1%	74.5%	8.5%	2.4%	85.5%	14.5%
일본→인도	즉시 철폐	B5	소계	B7	소계	B10		누계	양허 제외
	약 7.6%	약 10.0%	약 17.6%	약 0.1%	약 17.7%	약 72.0%		약 90%	약 10%

주1 해당국 양허 스케줄에 의거하여 작성
주2 우리나라의 E-5, E-8은 각각 5년 철폐, 8년 철폐를 뜻하고, RED는 8년 내 1~5%로 인하, SEN은 10년 내 50% 감축을 의미
주3 B5, B7, B10은 각각 5년간 철폐, 7년간 철폐, 10년간 철폐를 뜻함
주4 관세감축 방식은 양 FTA별로 차이가 있어 한·인도 CEPA는 '1/n' 방식으로 E-5의 경우 1/5씩 관세를 인하하고 일·인도 CEPA는 '1/(n+1)' 방식 B5는 1/6씩 감축하게 됨

일·인도 CEPA 주요 내용의 비교

분야	일·인도 CEPA	한·인도 CEPA
상품	• 일본 측 개방수준 약 97%(10년간) • 인도 측 개방수준 약 90%(10년간) – 즉시철폐 비율 7.6% – 8년 내 철폐 비율 약 18% – 10년간 철폐 카테고리 비율 약 72%	• 우리 측 개방수준 약 90%(10년간) • 인도 측 개방수준 약 85%(10년간) – 즉시철폐 비율 약 38% – 8년 내 철폐 비율 약 75%
원산지	• 일반기준 : 부가가치기준(35%) + 세번변경기준(CTSH)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채택	• 일반기준 : 부가가치기준(35%) + 세번변경기준(CTSH)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채택
서비스	• 인도 통신, 유통 5개 분야에서 우리보다 일본 측 추가 개방 • 인도 통신서비스 지분 74%까지 허용 • 4년간 은행지점설치 10개 설립 호의적 고려 • 화물우선적취 제도 폐지	• 인도 통신서비스 지분 49%까지 허용 • 4년간 은행지점설치 10개 설립 호의적 고려
인력 이동	• 상호 관심 분야 비대칭 개방(세부직종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를 제시) – 일본 비전문인력도 개방하여 우리보다 폭넓은 개방 • 인도 측 관심 분야인 간호 및 개호서비스(간병인)은 발효 후 2년 내 결론 짓기로 합의	• 163개 전문직 한·인도 양국 상호 개방
기타	• 인도 측 관심분야인 복제의약품 판매 신청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를 규정	

주 상품분야 개방수준 및 비율은 금액 기준

10%에 가까운 관세를 적용받는 사례도 있어 해당 품목의 일본산과의 경쟁에서 수출물량이 50%정도 감소했던 경험도 있다.

특히 일·인도 CEPA 이후 일본산에 비해 국산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대우가 우리의 주력상품인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에 적용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항이다.

한·인도 CEPA 개선 주안점

실제 한국과 인도가 CEPA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에 비하여 양국 간 교역규모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이에 개선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협상은 단순히 일·인도 CEPA와 비교하여 가시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관세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정의 개선은 흔하지 않은 기회임을 명시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양국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양허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상품 등에 대한 對인도 수출 비관세장벽의 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가운데서도, 인도에서 자체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동차용 냉연, 열연강판 등 고품질 우리 제품들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 비하여 크게 뒤져있는 투자에 대해서도 상호 투자협력의 기회를 제고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모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프로젝트로 향후 인프라 관련 제품이나, 건설장비 및 기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비관세장벽 및 우리의 對인도 투자환경이 개선될 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의 막대한 인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에, 식품 및 식품가공업 분야에서의 협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 무역협상의 상호호혜성과 인도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對한국 무역적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역시 인도산 망고 등 인도의 관심품목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의 추가 개방을 적극 고려하여 한·인도 CEPA 개정에 대한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세를 고취, 유지시키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세종시 전의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이오나노켐은 16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매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광학필름수지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이오나노켐(대상)

철저한 FTA 사전 준비로 중국 진출의 어려움 해결하다

광학필름수지 전문 기업 ㈜이오나노켐은 지난 2015년부터 내수 위주에서 중국 수출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중국 진출은 온갖 규제와 통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에 가까웠다. 이러한 난관의 해결책이 바로 한·중 FTA에 있었다.

세종특별시 전의면에 위치한 전의산업단지에는 코스매틱이나 연구소의 공장이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 특이하게 케미컬 물질을 다루는 기업이 있어 눈에 띈다. ㈜이오나노켐은 광학필름수지, 하드코팅액, 자외선경화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7년 설립되었고, 현재 연구원 7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적은 직원으로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케미컬 기업

전의산업단지에 있는 ㈜이오나노켐 공장의 육중한 컨테이너 건물 안에는 이름 모를 화학물질이 담긴 원색의 드럼통이 천장까지 높이 쌓여 있다. 직접 화학물질을 합성하고 배합하는 건물 안에는 생산에 필요한 가공 기계들이 들어서 있고, 사무실 안에는 화학 물질의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은 플라스틱 병들 수십여 개가 늘어져 있어 마치 과학 실험실을 연상케 한다.

언뜻 외관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곳인지 알아채기 어렵지만 ㈜이오나노켐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학물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재료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TFT-LCD BLU용 광학수지'다. 액정 디스플레이(LCD)는 그 자체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LCD 뒤쪽에서 빛을 비춰야만 사용자가 LCD에 나

타난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때 LCD 뒤쪽에 고정시키는 광원인 백라이트를 'BLU'라고 하며 TFT-LCD BLU용 광학수지는 그 빛을 균일하게 펼쳐주기 위한 필름을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재료이다. ㈜이오나노켐은 주로 이러한 광학필름 생산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이외에도 3D 모델링을 위해 사용되는 자외선 경화수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팅제나 접착제 등으로 사용되는데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경화 시간이 짧아 대량생산이 용이합니다. 원료 가격이 고가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한·중 FTA, 중소기업 중국 진출을 위한 소중한 버팀목

내수 중심으로 착실하게 실적을 쌓아오던 ㈜이오나노켐이 중국 수출로 눈을 돌리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주 거래처의 중국 진출과 관련이 깊었다.

"주 거래처의 해외 진출과 함께 최근 국내 전자시장의 방향이 LCD에서 OLED로 이동하면서 국내의 LCD BLU용 광학수지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중국 진출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OLED는 자체발광현상을 이용해 만든 디스플레이로 기존의 TFT-LCD에 비해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다.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TFT-LCD에 반드시 필요했던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백라이트에 필요한 광학필름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LCD 생산 라인을 매각하거나 연구를 중단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 LCD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쪽으로 많은 생산 공장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중국 진출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래처가 중국 공장을 만들면서 우리 역시 중국 진출을 고려했지만 그러려면 법인 문제나 투자비용 등 걸림돌이 많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중소기업로서는 무척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요. 다행히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중국에 따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죠."

중국 진출 시기에 때마침 중국과의 FTA가 발효된 것도 타이밍이 좋았지만 한발 앞서 FTA를 준비했던 사전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다.

"한 두 달 정도 인터넷을 통해 FTA에 대해 혼자 공부했습니다. 관세청과 여러 웹사이트에 FTA에 대한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원산지 증명에 대비해 원재료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된 후 ㈜이오나노켐의 김태영 부사장은 대전 세관의 공익 관세사를 만나 FTA 컨설팅을 받았다. 어느 정도 미리 공부를 해둔 덕에 용어나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빠르다 보니 그 만큼 일의 효율도 높았다. 꽤나 오래 걸릴 줄 알았던 FTA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열흘 안에 마무리 되었다.

"특히 인증수출자를 획득하면서 그 뒤로는 따로 서류 작업를 하지 않아도 되니 더 편해졌습니다. FTA를 처음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생소한 서류 작업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 제대로 배운 후 익숙해지면 가장 쉬운 것이 서류작업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는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검증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FTA에 대한 인수인계, 서류 관리 등이 이후 사후 검증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언어나 거리 문제, 개발 속도의 차이 등 중국 수출의 어려움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LCD 기술과 다양한 문제 대처 노하우에 대한 신뢰가 높아 수출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접 중국으로 진출하진 않았지만 순차적 관세 철폐로 현재 5~6%의 관세혜택을 받고 있고, 2019년에는 100% 무관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오나노켐은 내수의 어려움을 FTA를 통한 해외 수출과 제품 연구개발로 극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순차적인 중국 진출과 매출 확보 그리고 LCD 광학수지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1

2

3

1 세종시 전의면 전의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이오나노켐 사옥 2 (주)이오나노켐 연구원들은 화학물질의 배합뿐 아니라 합성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3 자외선 경화수지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양안관계로 인하여 대만은 UN에서 축출되었고 아직까지도 여타 많은 국제기구에 회원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WTO 가입 비하인드 스토리

양안관계(兩岸關係)의 첨예한 갈등 속에 이뤄낸 값진 성과

가장 최근 라이베리아(2016년 7월 14일)와 아프가니스탄(2016년 7월 29일)의 신규가입을 승인한 WTO는 전 세계 총 164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거대한 국제기구다. 동시에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관계의 복잡한 이해(利害)와 어려운 이해(理解) 속에 세계무대에서 유일하게 대만의 단독 가입자격이 남아있는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최종 가입 승인까지 숨 막혔던 대만의 WTO 가입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래서 더욱 흥미롭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UN이다. 전체 회원국이 총 193개에 달하는 UN의 사무총장은 세계의 대통령에 비유되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가입 조건에서 '국가(State)'에 한해서 승인을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UN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하나의 표식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때때로 뜻하지 않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관계가 그 실례다.

양안관계의 이해와 대만의 국제적 위상

양안관계(兩岸關係)라는 것이 있다. 청나라 시대 말기, 중화민국의 국부로 불리는 쑨원(孫文)과 국민당의 주도로 신해혁명이 성공했고, 1911년에 본격적인 현대 중국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중화민국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공산당과의 대립으로 국공내전이 발발, 전쟁에 패한 국민당은 쫓기듯 1949년 대만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 결과로 중국 대륙에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만은 중화민국을 계승하게 되었다.[1] 이후 지금의 대만땅에 출범한 국민당의 중화민국 정부는 철저한 반공주의 의식 하에 미국과 협력하며 국가로써 발전, 중국과의 팽팽한 대립구도를 유지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대신해 대표 역할도 해왔으나 70년대 초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급

기야 UN에서 축출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UN 결의안 2578호).[2]

WTO 가입조항과 대만의 WTO 가입 작전

이러한 역사 때문에 대만은 지금까지도 독립성을 인정받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WTO의 경우는 새삼 흥미롭다. 'WTO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제12조(가입)'를 통해 WTO의 가입 자격을 '국가(State) 또는(or) 자신의 대외무역관계 및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독자적 관세영역'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여기서 대만은 국가라는 자격 여하와는 별개로 독자적 관세영역의 자격으로 WTO 가입 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실제 대만은 WTO가 설립되기 3년 전인 1992년부터 일찌감치 참관국(Observer)자격으로 WTO의 전신격인 GATT에 가입했고, WTO가 설립된 직후라고 볼 수 있는 1995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 관리들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던 대만의 행보가 암초를 만났는데 바로 중국의 존재였다. 아니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GATT 체제 하 10년 이상 가입 노력을 해 온 중국과 이와 관련해 92년에 합의된 중국 우선 성명[3]이 대만의 WTO 가입에 난관을 초래했다. 만약 대만이 중국보다 먼저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외교적 마찰과 대립이 심화될 것은 당연지사였다. 따라서 대만의 입장에선 자신들보다도 훨씬 뒤처진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게다가 중국의 WTO 가입에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 비시장경제권이라는 경제정체성의 이질성은 물론이요, 대만과의 외교적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통상적 관점에서도 비관세장벽 철폐,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부실 등 선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지속적인 가입 캠페인을 이어나갔다. 당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고, 대만의 독립을 선동했다는 비난을 감수한 방미 과정에서 미국에 대만의 WTO 가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만의 WTO 가입은 중국의 가입 이후에나 승인되었다. 이 역시 대만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가능했던 것임을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대만의 WTO 가입 승인은 하루 전 중국이 승인을 받은지 약 24시간 만에 이뤄졌는데,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대만은 2002년 1월 1일 가입된 것으로 WTO 홈페이지는 기록하고 있다. 두 국가는 나란히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렸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

WTO 가입 이후 대만 그리고 한국

중국이 143번째, 그리고 이어 144번째 WTO 회원국이 된 대만은 그야말로 감격했다. 대만의 WTO 가입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써 대만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켜준 매우 중요한 이정표인 동시에 대만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거점이 중국 본토로 이전하며 상품보다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절실했던 대만에게 상품과 서비스 모두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WTO로의 가입은 분명 청신호로 작용했다. 하지만 WTO 가입이 가져올 역풍도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가입 이전까지 대만은 중국에 대한 의존성과 예속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하고자 중국과의 무역을 금지해왔는데,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WTO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 정신과 국제통상규범에 입각, 중국산 수입품과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국과 대만이 상호 간에 직접적으로 WTO 분쟁에 연루된 적은 없다. FTA에서도 대만의 성적은 부진하다. 여전히 중국의 입김을 우려한 때문인지 대만과 FTA로 인연을 맺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중남미(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등)지역에 있는 우방국가들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선 대만과 주력 상품이 다수 겹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한·중 FTA 이후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대만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과 대만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양자 교역환경 조성, 나아가 양자 FTA까지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교가 단절된 현 상황에선 양국 간 국교 회복 및 외교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우선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대만과의 교역관계 발전 과정에서의 한·중 관계 또한 슬기롭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양안이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자연적 군사분계선과 같이 자리잡은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서안(중국)과 동안(대만)에 마주한 상황을 일컫는다.

2 1971년 66개에 이르던 수교국이 1972년 말 39개로 반 토막 나버렸다. 한국과도 줄곧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오다 1992년 한국이 중국과 국교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국교가 단절되었다.

3 기록에 따르면 GATT 체제 하 체약국(WTO와 달리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었으므로 회원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체약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들은 중국의 가입이 이뤄진 직후에야 중국이 대만으로 하여금 '독자적 관세영역'자격으로써의 가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던 바 있다.

글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사진 한국경제신문

소프트웨어, 조작기술, 영상 및 위치 정보 처리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다용한 용도의 드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전 품목분류: ㉑무인항공기 드론(Drone)

드론의 품목분류는 물품의 구조, 핵심 기능, 구성품의 가격비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

차세대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은 촬영, 레저, 추적 및 수색, 수송 등 다양한 용도로 빠르게 상업화 및 대중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여러 드론 제품들의 품복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드론(Drone)은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원격 조정이나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소형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표적, 정찰, 감시 등의 군사용으로 개발·활용되었다가 점차 그 목적이 기업, 미디어, 개인을 위한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 조종기에 따라 조종되는 비행체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된다. 즉, 헬리캠, 드론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해당 물품의 구조, 핵심 기능, 용도, 구성품의 가격비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메라의 성능이 낮은 놀이·유희용으로 제작된 것은 오락용품으로서 HS 9503.00호에, 운반용 헬리콥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같은 경우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HS 8525.80호 등에 분류될 수 있다.

멀티 기능 드론의 HS 코드 분류 예

얼마 전 WCO의 HS 위원회에서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무선통신으로 조작하는 드론의 품목분류에 대해 논의됐었다. 쟁점 대상 물품은 네 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헬리콥터 본체와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터리, USB 등과 함께 포장된 세트의 형태로 제시된 드론이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무선 조종되며, 기체 안에 내장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체는 스마트폰과 Wi-Fi 무선통신으로 연결돼 조종되며 네 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한다. 또한 고화질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영상을 촬영해 사양에 따라 스마트폰에 전송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트 전체를 모터가 결합한 완구로 보아 HS 9503.00호에 분류할지, 본체 또한 헬리콥터와 카메라가 결합한 복합 구성품이므로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 8525.80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본질적 특성을 헬리콥터로 보아 HS 8802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WCO HS 위원회는 우선 HS 9503호의 완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데, 이 드론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단순히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는 HS 950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다.

HS 위원회는 쟁점 물품이 항공기의 기능이 있으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실제 항공기 조종을 체험하는 효과를 주며, 촬영한 영상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등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분류되는 HS 8525.8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쟁점 대상 물품과는 다르게 비행기 본체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장착되었더라도 카메라에 주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드론의 경우에는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하며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무선 전용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완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모터가 결합된 완구류로서 HS 9503.00호에 분류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드론을 무선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은 원칙적으로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는 HS 8526호에 분류된다.

드론의 몇 가지 장애물

드론 기술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된다 해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 많은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는다.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어 배달할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다.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한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어난다.

또 상업용 드론에 대한 제약 중 하나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는 전략물자로 취급되어 수출이 자유롭지 않다. 드론은 엄청난 기술과 과학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제조법을 담은 도면이나 사용 매뉴얼은 전략물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과 제조, 사용에 이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의 품목을 가리킨다. 테니스 라켓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탄소섬유나 자동차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 기계류, 샴푸의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 등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전략기술'은 전략물자의 제조와 개발과 생산, 사용에 필요한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일컫는 것이다. 최근에는 드론시장의 성장에 따라 드론의 기술력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상업용 드론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드론의 특성상 총기 또는 폭탄 등을 실어 무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체 카메라 기능으로 감시·정찰 등 테러에 사용되기 쉽기 때문에 전략물자인지, 상업용인지 판단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수출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드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상업용 드론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센서, 통신기기, 배터리 등과 같은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진출기회일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제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부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드론 산업을 본격 지원하고 있다. 드론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이 향상되고 품질력 확보를 통해 한국산 드론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국내화장품, 중국 내수시장서 새로운 과제 직면

최근 중국에서 주 소비층에게 인기 높은 한국 브랜드를 따라하는 '모방 전략'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소비재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역시 더욱 높아졌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로컬사 한국 연예인 모델로 기용하고 제품 디자인 따라잡기 주력

최근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와 제품 콘셉트를 따라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자칫했다가는 중국시장에서 한국화장품이 따라잡힐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Nielson)이 중국의 화장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선호도는 각각 53%, 19%로, 해외 브랜드 제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센터(ITC)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 중국에 두 번째로 많이 화장품을 수출한다. 한국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2011년 1억 8,427만 6,000 달러에서 2015년 9억 9,357만 1,000 달러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52.3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중국의 화장품 전문 포털 360화장품망에 따르면 전체 화장품 소비자의 약 65%를 차지하는 20~30대 여성의 68%가 한국 화장품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들 중 86%는 재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며 큰 인기를 얻자 위협을 느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 브랜드의 인기 요인을 분석하며 한국 브랜드를 따라잡기에 나섰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화장품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로컬 브랜드들은 한국 연예인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거나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모방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거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매출이 크게 증가한 로컬 브랜드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한 뒤, 중국으로 역진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해외직구도 위생허가 받은 제품만 유통, 화장품도 검험검역 목록에 포함

중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017년 5월부터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허가를 적용하며,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직구 품목인 화장품은 예전에는 통관신고서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었는데, 앞으로는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됐다. 화장품은 거의 모두 '검험검역 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품의 규제를 받게 됐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화장품 해외 직구액은 2,986억 원에 달했다.

또 수정된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도 올해 말 확정될 것으로 보여, 규정 준수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이공을 통한 수입 역시 규제대상으로 한국 화장품의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 화장품 위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한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CFDA 위생허가증 등 관련 법규 반드시 준수

중국 위생허가의 주무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며, 위생허가 신청 전 반드시 중국 내 설립된 법인을 중국 내 책임회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책임회사의 역할은 수입 화장품의 중국 내 위생허가신청에 대한 책임회사로 위생허가증 신청 및 연장 시 법인대표의 서명이 필요하다. 재중책임회사의 책임으로는 중국 내 위생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위생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위생허가증 제출서류 스캔본 및 위생허가증 원본을 수령·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증 재발급 혹은 신규신청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기업의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위생허가 절차는 자료준비 및 제출 → 위임장 심사 및 아이디 발급 → 샘플테스트 → 심사 → 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한다.

위생허가 취득 후 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품명
- 판매원, 제조사의 정보
- 수입화장품 원산국 정보
- 순함량
- 전성분 표시
-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생산번호, 유통기한
- 제품표준번호
- 수입 비특수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번호
- 수입 특수 화장품 허가번호
- 안전경고문구(필요 시)
  (15g 혹은 15ml 이하 제품, 필수표기사항 아님)

대중국 화장품 수출 제언

일반 공산품에 대한 인증의 범위나 요구 사항은 한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으나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같은 제품들의 등록이나 허가 사항은 대부분의 나라가 독자적으로 그 요구사항을 법으로 정해 시행하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최근 바이어 혹은 일부 대행업체의 1~2개월 내 허가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마케팅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을 걷는 업체들을 자주 목격된다.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CFDA 위생허가 및 화장품 라벨 규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⑯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저작권

계약 내용에 포함된 저작권 이용료, 이용 범위도 비밀유지의 대상 될 수 있어

중국 저작권 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의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관련 저작권 계약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은 표준 계약서에서 제시된 내용보다는 훨씬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관계 및 해당 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

라. 저작권 이용료 보고 및 감사

경상 이용료에 관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상 이용료는 통상 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마다 저작권 허락자에게 지급되는데, 저작권 이용자는 그 과정에서 경상 이용료가 산출된 근거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저작권 허락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해당 저작권 이용료 보고서를 통하여 지급된 경상 이용료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여부,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저작권 허락자가 이용자가 제출한 보고서 및 그에 따라 산출된 경상 이용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용료 산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 저작권 이용료 보고 및 감사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감사를 진행할 제3자(보통 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고, 감사 진행 방식, 소요 비용 부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

마. 제3자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이용자에게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제3자의 침해를 감시하기란 쉽지 않으며, 중국기업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수익하는 자이므로, 중국기업에게 감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더욱이 저작권의 독점 또는 배타적 이용을 보장하는 계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가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많다. 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의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절차로 대응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및 수익의 부담도 정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 이용자가 저작물을 제조하여 판매 또는 서비스한 결과 오히려 제3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대응하고, 소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약속할 수 있다. 이는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보장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수 있는데, 저작권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시 저작권자에게 보다 많은 보장을 받기를 원하며, 저작권자는 이를 면책 받고자 할 것이므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바. 비밀의 유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경영 또는 기술상 비밀정보(노하우, 상거래내역, 고객자료 등)도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계약 내용에 포함된 저작권 이용료 지급 방식 및 금액, 저작권 이용범위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이용료 지급 방식 및 금액이 공개되면 저작권자가 다른 유사한 계약에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고, 저작권 이용범위가 공개되면 저작권 이용자의 사업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경영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인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넣으면서도, 계약 자체의 중요 내용들을 비밀로서 보호해야 하는 점을 간과하기 쉬우므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공개가 곤란한 사항들은

보호 기간을 정하여 비밀로서 보호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양 당사자 간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비밀정보의 유출은 많은 경우 해당 정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직원들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직 시에 비밀유지약정의 체결 등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를 벗어나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직접 구속할 수는 없지만, 관련된 일방 당사자에게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 의한 비밀 유출 시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 의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사. 계약 기간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기산 시점은 계약에 서명하는 계약 체결일이 되지만, 별도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정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이 불명확하면, 전체 계약 기간 자체가 변동될 수 있고 양자 간의 다툼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조항에서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된 조항의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에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며 저작권 자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허가를 취득한 날을 계약 효력 발생일로 정하기도 한다. 계약에 관련된 사업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계약 해지 사유

저작권 이용허락범위 및 이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독점 또는 배타적인 이용허락을 하고, 그 이용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저작권 이용자가 기대했던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저작권 이용자도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이용료(정액으로 정해진 경우)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이러한 사유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양한 해지 사유들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의 독점적 또는 배타적 권리를 허락한 경우, 이용료와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을 고려하여 계약의 해지 사유 내용을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자. 계약 언어,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중국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영문보다는 중문 또는 한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언어에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미가 상충하는 경우, 최종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언어를 하나로 정하는 것이 좋다.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에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고,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1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협의로 계약에 적용되는 실체적 법률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48조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내용은 보호가 청구된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법이 강제 적용될 수 있다.

분쟁발생 시 그 해결은 법원이나 중재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중재를 통한 해결은 법원을 통한 해결보다 신속하고 일회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국제거래에서 유용한다. 유효한 중재 약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 중재 판결 결과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각 국가의 법원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은 중재판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판단한 후 승인하고 집행한다. 한국기업은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나, 중국기업은 중국 내에서의 중재를 원할 것이므로, 양자 간의 양보와 협상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 피신청인 소재국에 따라 중재기구를 택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다. 즉 피신청인이 한국기업인지 중국기업인지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 하나를 중재기관으로 정하는 것이다.

글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사진 한국경제신문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③

포괄발급하는 경우 포괄증명기간 내에 물품이 수입되어야 협정 적용 가능

2012년에 타결되었으나 콜롬비아 측의 국회비준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콜롬비아 FTA(이하 '한·콜 FTA')가, 지난 6월 15일 콜롬비아 측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함으로써, 통보 접수일인 6월 15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지난 호에 이어 한·콜 FTA의 주요 내용 중 원산지증명 및 적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적용범위 및 활용 노하우

한·콜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미/한·호주/한·캐나다 FTA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내의 복수 수입 건에 대해 최초에 발급된 한 장의 포괄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콜 FTA 협정문 제3.18조 원산지증명서 5항〉

5.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나.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써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그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 수입**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기준에 충족되고, 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란에 기재된 기간 내에 수입이 되는 물품이라면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없이도 당초 수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단일 선적 건에 대해 발급되는 경우에는 포괄기간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까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반대로 복수선적 건에 대한 포괄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 수입건별로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량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품목 상세는 동일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품장 상의 품명과 일치되어야 한다.

포괄증명기간은 최대 1년(ex : From : 2016. 9. 1 / To : 2017. 8. 31)의 기간 내에서 발급자(수출자 or 생산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년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포괄증명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당 수출품목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등 역외산으로 원산지 지위가 바뀌는 경우에는 즉각 해당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 기존에 발급됐던 포괄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취하였던 포괄원산지증명서의 제출만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하므로, 비원산지제품에 대해 협정을 적용받아 추징을 당하는 경우 책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전 통지했던 메일 전문 등을 증빙으로 하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괄발급하는 경우 포괄증명기간이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으나, 포괄증명기간 내에 물품이 수입되어야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입되는 날이 기준이 아니라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되는 일자가 포괄증명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단순 참고 목적이며,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밝힙니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 및 활용방법에 대한 해석

한·콜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협정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내 거래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 또한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콜 FTA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국문]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이 문서는 **수출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고 신고서 작성 시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또한 **수출자의 사용을 위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영문]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is document must be completed legibly and in full by the exporter and be in the possession of the importer at the time the declaration is made. **This document may also be completed voluntarily by the producer for use by the exporter.** Please print or type. If more space is needed, please use additional pages.

상기 규정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의 첫 문단이다.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수출자의 사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①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것.

②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발급하고,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또한, 다음의 협정문의 내용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콜 FTA 협정문 제3.18조 원산지증명서〉

3.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

지난 호에서는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로서, 상기 규정을 통해 '수출자의 인지'만 가지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규정 및 '부속서 3-다'의 내용을 통해 국내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FTA이행특례법 상의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같이 국내 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석해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수입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고 그 반대로 수입자에게는 생산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종전에도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부자재 및 상품으로서 수입 당시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동 협정상대국으로 수출 시 누적기준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입증자료로 사용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 상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생산된 물품의 국내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굳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

다만, 수입거래의 경우로서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콜롬비아의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수입자에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서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부분이며, 결국 원산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원산지포괄확인서인지 보다는 생산자가 어떻게 원산지기준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매 및 생산 자료 등 그 실질일 것이다.

글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Materials to Demonstrate Product Country of Origin under the UKFTA

I. About Exporter/Manufacturer)
II.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IV. Additional Information
V. Evidence/References

한·미 FTA 하에서 물품의 원산지 소명 자료

I. 수출자 / 제조자 소개
II.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IV. 추가 정보
V. 관련 증빙자료

FTA 사후 검증팁: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⑧

수출 계약 체결부터 완료되기까지의 과정 모두 증명

지난 호에선 검증대상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방법에 대한 핵심부분인 Chapter III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FTA 원산지검증은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뿐만 아니라 FTA 적용의 기본원칙(당사자요건, 직접운송원칙, 충분가공원칙 등)이 충족되었는지, 실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FTA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와 발생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한 과정별 필요 서류

1. 계약 체결 단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문서로 물품을 주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P/O, 주문 e-mail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FTA 적용 기본요건인 당사자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이 되며, 만약 제3국에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한 경우라면 제3국 송장을 발행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는 실제 협정국의 수출자가 발급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재 발주

계약이 체결된 후 물품 생산을 위한 자재를 발주하게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 상품이라면 계약 전 물품을 만들기 위해 자재를 발주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재료 발주량은 BOM과 비교하여 실제 완성품의 수량을 만들 수 있는 양인지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완성품 1개를 만드는 데 A원재료 10kg이 필요하고, 수출 물량이 100개라면 A원재료 발주량이 최소 1000kg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재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이 제조되었다는 것은 실제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과 같다.

3. 자재 입고

발주한 자재가 실제 입고되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좋다. 입고내역을 관리하여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물품이 운송되면 거래명세서 등을 받고 서명하여 물품을 수취했음을 입증하게 되는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에 원재료의 품명과 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BOM과 일치시키켜야 하며, 일치하지 않다면 동일한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생산

생산단계에서는 각 공정별 작업지시서와 공정이 완료된 일자, 검수보고서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것이 검증 성공에 도움이 된다.

섬유와 관련된 물품의 경우 실제 몇 명이 투입되어 물품을 제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와 작업시간 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제조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스펙과 작업자의 수, 작업시간, 투입된 원재료의 양을 비교·검토하면 실제 제조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제조자의 생산능력보다 많은 물품을 수출했다면 역외산 물품이 포함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5. 납품·수출

수출자에게 공급하거나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거래명세서나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등의 서류가 발생된다. 이러한 서류로 실제 거래물품에 대한 정보와 가격, 직접운송 등을 입증할 수 있다.

6. 대금 회수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실제 물품금액이 송품장 상의 금액과 일치함을 입증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FTA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실제 역내에서 생산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CHAPTER Ⅲ. 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HS 코드 분류와 이에 따른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초점을 맞추어 증명했다면, **CHAPTER IV. Additional Information** 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외에 수출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증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검증 소명자료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는 별첨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작성한다.

1. Actual labor cost involved in production of the articles, proof of factory labor.
(물품 생산에 투입된 생산인원의 임금 지급내역 증명)

: 물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작업자에 대한 정보이다. 수출품을 만들 충분한 능력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 인원 리스트와 재직증명서, 임금지불내역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대장), 출퇴근 기록(Time Card) 등으로 증명한다.

2. A copy of the letter of credit and/or proof of payment records from the U.S. purchaser.
(주문자가 발급한 신용장 또는 대금 지급내역)

: 대금지급내역으로 물품이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물품의 가액이 실제 송품장이나 수출신고필증 등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증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물품 가격에 따라 역내산 원재료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가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3. Export documentation showing that goods claimed to be produced by a factory were the goods actually exported. (물품이 실제 수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수출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서류로서 필수 제출서류이다. 오류사항이 있다면 이를 정정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1)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수출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한글본을 번역할 필요 없이 영문본을 제출하면 된다.

(2) Invoice **(상업송장)** :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을 함께 수출한 경우 이들 구분이 명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제3국 송장이 발급된 경우라면 실제 수출자가 발급한 송장에 제3국에 있는 회사 명칭, 주소 등의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포장명세서상의 물품 내용, 총중량 및 순중량(Gross weight, Net weigh), 포장 박스 개수 등이 수출면장, B/L, 원산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선하증권상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FTA 특혜관세 적용 시 기본원칙인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했는지 증명하는 데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협정당사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리상,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거나 환적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If production involved sub-contracting: transaction records and factory production records of all subcontractors. (협력업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가공을 한 경우 해당 생산기록)

: 협력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제조하거나, 일부 공정을 외부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도에 해당공정과 제조업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출고 내역, 거래명세서, 작업지시서, 협력업체에서 작성한 제조공정도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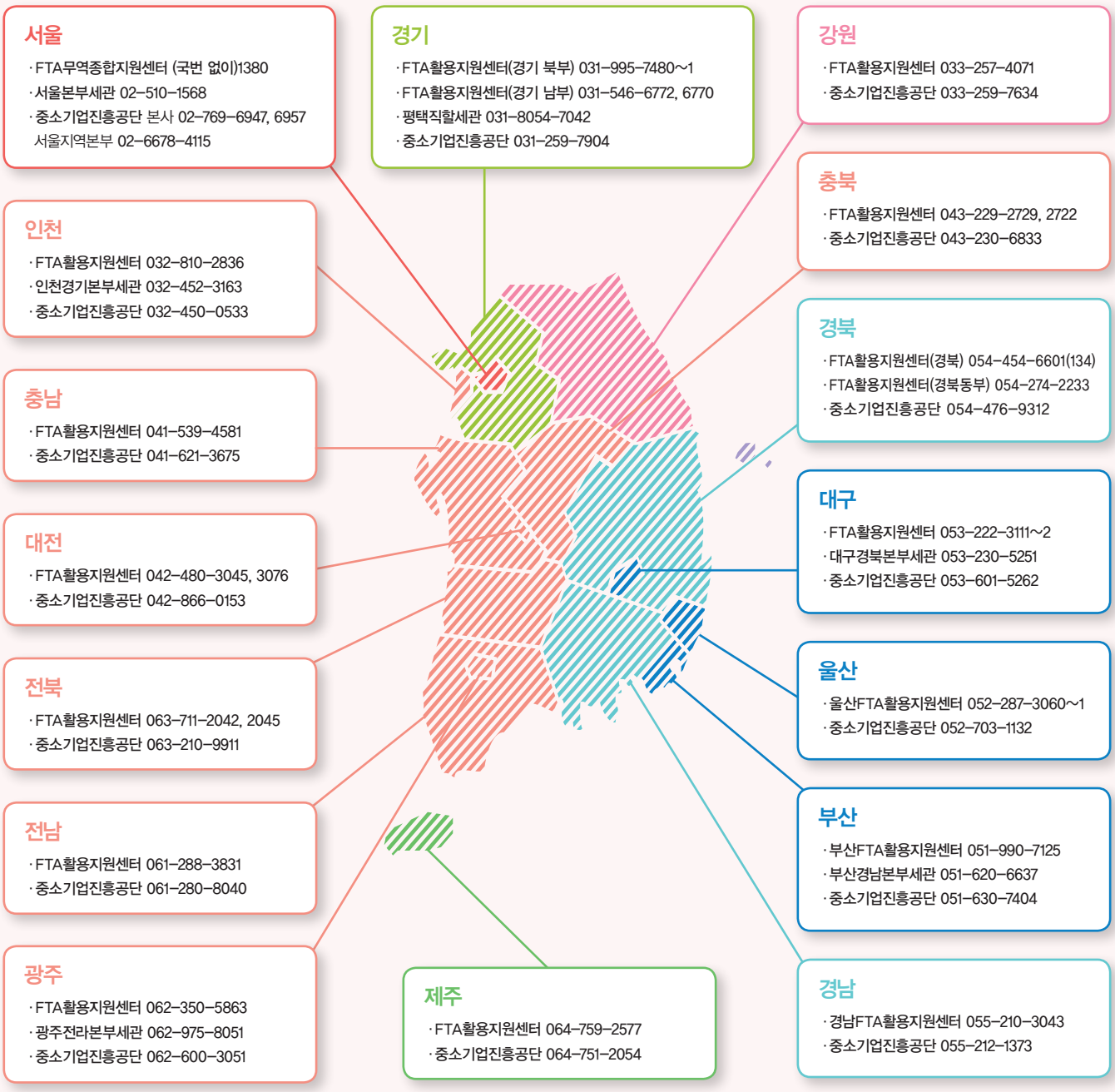

서울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1380
- 서울본부세관 02-510-1568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02-769-6947, 6957
  서울지역본부 02-6678-4115

경기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북부) 031-995-7480~1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남부) 031-546-6772, 6770
-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 중소기업진흥공단 031-259-7904

강원
- FTA활용지원센터 033-257-4071
- 중소기업진흥공단 033-259-7634

충북
- FTA활용지원센터 043-229-2729, 2722
- 중소기업진흥공단 043-230-6833

인천
- FTA활용지원센터 032-810-2836
- 인천경기본부세관 032-452-3163
- 중소기업진흥공단 032-450-0533

경북
- FTA활용지원센터(경북) 054-454-6601(134)
- FTA활용지원센터(경북동부) 054-274-2233
- 중소기업진흥공단 054-476-9312

충남
- FTA활용지원센터 041-539-4581
- 중소기업진흥공단 041-621-3675

대구
- FTA활용지원센터 053-222-3111~2
- 대구경북본부세관 053-230-52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3-601-5262

대전
- FTA활용지원센터 042-480-3045, 3076
- 중소기업진흥공단 042-866-0153

울산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052-287-3060~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2-703-1132

전북
- FTA활용지원센터 063-711-2042, 2045
- 중소기업진흥공단 063-210-9911

부산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051-990-7125
- 부산경남본부세관 051-620-6637
- 중소기업진흥공단 051-630-7404

전남
- 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3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1-280-8040

경남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055-210-3043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212-1373

광주
- FTA활용지원센터 062-350-5863
- 광주전라본부세관 062-975-80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2-600-3051

제주
- 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 중소기업진흥공단 064-751-2054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에릭 홉스봄은 그의 저서를 통해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인 혁신이 아닌 영국의 사회구조와 식민지의 영향이 컸다고 말한다.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㉒혁명의 시대

산업혁명은 혁명적인 기술의 결과가 아니다!

에릭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는 세계 자본주의가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대혁명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의 제국주의와 과거 중국의 몰락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한다. 헤겔의 말처럼 결정적인 세계사적 사건들이 정말로 반복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역사서에 다시금 눈을 돌려야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1917~2012)은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사책을 집필했다. 근대 3부작으로 1789년 프랑스대혁명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다룬 《혁명의 시대》(1962), 《자본의 시대》(1975), 《제국의 시대》(1987)에 이어 20세기 현대사 3부작으로 1914년부터 1991년까지를 다룬 《극단의 시대》(1994), 《미완의 시대》(2002), 《파열의 시대》(2012)를 출간했다.

사회적 변형의 기본 모델, 이중혁명

이중에서 '혁명과 자본주의 세계의 형성'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혁명의 시대〉는 프랑스대혁명(1789)부터 7월혁명(1830)을 거쳐 실패로 끝난 2월혁명(1848)을 다루면서 19세기의 첫 번째 국면인 산업 자본주의의 등장을 분석하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규모로 형성된 세계 자본주의는 이중 혁명, 즉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대혁명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이 핵심 주제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경제를 낳았다면 프랑스대혁명은 자본주의 정치를 낳았다는 것이다. 즉 이중혁명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경험해야만 될 사회적 변혁의 기본 모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가 산업혁명을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자본주의 사회를 가능케 했던 역사적 시발점이자 그 자체가 이후 형성될 산업자본주의의 원형을 만들어냈다는 점 때문이다. 홉스봄의 설명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요소는 이미 17세기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따라서 18세기 후반이 되서야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

에릭 홉스봄(1917-2012)
케임브리지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일찍부터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가졌으며 자본주의 형성 과정과 그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 삶에 근거한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역사 연구로 명성을 얻었다. 저서에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등이 있다.

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승리를 굳힌 하나의 계기였지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특정 산업, 즉 면공업이 우월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미 세계시장(식민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면공업과 함께 철도와 석탄업의 발전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논거로 제시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세계성에 주목하면서, 무엇보다 영국의 발전이 제국주의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급속한 발전을 통해 산업혁명을 최초로 이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세계시장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 여기서 홉스봄은 자본주의 발전에서 해외식민지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영국의 자본주의적 사회경제로의 변화와 세계시장의 존재야말로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일찌감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는 것이다.

홉스봄은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산업혁명은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팽창에 대응해 기존의 기술을 사회적으로 조직하여 그에 부응할 수 있었던 능력에 달려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기술의 발명 등으로 산업혁명이 초래되었다는 기존 역사가들의 분석과는 대비된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홉스봄에 따르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독특한 사회구조와 세계에서의 위치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이 면공업에서의 우월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기술을 단순한 형태로 재편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이미 세계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 덕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초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국이 식민지와 여타 세계 지역들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 그리하여 새롭게 초래된 수요를 단순기술에 입각한 생산의 확장을 통해 감당할 수 있게 된 점은 영국으로 하여금 거대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19세기 세계의 경제가 주로 영국 산업혁명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면 그 정치와 이데올로기는 주로 프랑스혁명에 의해 형성되었다. 영국은 비유럽 세계의 전통적인 경제, 사회적 구조를 파괴한 경제적 폭약, 즉 철도와 공장의 모델을 19세기 세계에 제공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 세계의 혁명들을 만들어냈으며 이 혁명들에 이념을 부여하여 몇 가지 삼색기가 사실상 생성돼가는 모든 국민들의 상징이 될 정도였다." 산업혁명이 경제적 폭약이었다면 프랑스혁명은 유럽의 구체제의 몰락과 정치변동을 가져온 '정치적 폭약'이었던 것이다.

이 책에는 근대 일본과 중국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다. 홉스봄에 따르면, 모든 비유럽 국가들 중에서 서양과 맞부딪치고 서양의 수법을 써서 성공한 나라는 오직 한 나라뿐인데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17세기 초까지 서구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제1차 아편전쟁(1839~1842)에서 중국의 패배는 일본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일본은 영국의 승리를 서양적인 양식들이 이룩한 성과 그리고 서양의 방식이 펼쳐 보일 가능성을 실증해 보인 사건으로 본 것이다. 당시 일본의 파워 엘리트들은 중국조차도 서양에 대항할 수 없다면 서양적인 방식은 결국 세계 어디에서나 득세하게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결국 서구화를 서두른 일본은 한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제국주의로 치달았다.

반면 홉스봄은 중국은 서양을 모방하길 원하지 않았고 스스로 문명의 중심임을 자처하는 중화사상에 너무나 오래도록 길들여져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중국이 몰락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당시 소중화를 자처했던 조선도 이런 시각에 함몰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오늘날 한국은 다시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다시는 서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야심을 드러내고 있고,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헤겔은 결정적인 세계사적 사건은 반복된다고 했다. "그것은 한 번은 비극(tragedy)으로, 또 한 번은 소극(笑劇, farce)으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역사서를 읽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정리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NEWS

KOTRA, 몽골 경제사절단 1:1 상담회 후속 간담회 개최

참가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한자리 모여 성과 및 개선방안 협의

KOTRA는 9일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몽골 경제사절단 1:1 상담회 후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원석 KOTRA 정상외교경제활용센터장 (앞 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순방에 맞춰 개최했던 경제사절단 1:1 상담회에 대한 후속 간담회가 9일 서울 서초구 KOTRA 사옥에서 개최됐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지난 7월 17일(월) 박대통령의 순방지인 몽골에서 1대1 상담회를 개최해 국내기업 54개사 참가, 계약추진액 약 122억 원(1,105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간담회는 윤원석 KOTRA 정상외교경제활용센터장 주재로 개최됐으며 산업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사절단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해 참가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업 측에서는 총 12개사 대표 및 실무자들이 와서 이번 상담회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상담회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참가기업 관계자들은 비록 몽골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국기업과의 사업의지가 높은 바이어들을 다수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낯설게 느껴지던 몽골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원석 센터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몽골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후속사업을 통해 몽골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경제사절단 행사를 경제발전경험공유, 개발원조 등 경제협력의 큰 틀을 바탕으로 단품수출과 투자에서 벗어나 복합 수출과 솔루션 제공은 물론 보건·의료, 교육, 한류문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CEP 제14차 공식협상 개최

RECP 아태지역 경제통합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동력이라는 인식 공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4차 공식협상이 지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8월 6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4차 RCEP 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접근 협상과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등 총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이 진행되었다. 참여국들은 RCEP이 아태지역 경제통합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식협상 등을 집중 개최하여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총 14개 분야 협상**

작업반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8개)

소작업반 :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TBT), 금융, 통신 (6개)

자유무역협정 활성화로 수출부진 타개 총력

산업부,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FTA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지난 8월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공동민간위원장인 이경태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농어업인 지원 성과 분석 결과' 및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세관당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의 시사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일제 점검했다.

FTA 활용 지원센터 확대

상반기 수출은 연초 20%에 육박하던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어 지난 6월 2.9%까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하반기 수출 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수출을 확실한 증가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산의 중요성이 중점 거론됐다. 우선, 컨설팅·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을 종전에 원산지관리 중심에서 시장개척, 인증, 지재권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한번 신청하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성공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상담 전화 「1380」을 9월 중 확대 개편하여 수출 지원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한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며, 정보 탐색에서 원산지 증명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기업의 편의성 및 처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경제단체·학계·업종별 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성시별 단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중국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등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 대상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1차관은 "그간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온 만큼, 지금처럼 수출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자유무역협정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TA 활용 위해 산업부와 관세청 등 각 부처 노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주요 걸림돌인 복잡한 원산지규정·절차 및 다양한 형태의 활용·통관애로 해소의 시급성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 아래 우리기업의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관, 비관세장벽 등의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업종별 협의회'를 발족함과 동시에 업종별 기업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형 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단체와도 상호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 통관단계애로 해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과 수산분야의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는 농어업분야 세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까지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8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수립·추진 중인 농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평가 필요성과 우수성과 홍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Information

FTA 활용 수출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1:1 컨설팅 상담회 참가 안내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FTA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사후검증 애로 해소 및 사전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맞춤형 1:1 컨설팅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상담회 개요 |

- **대상** FTA 원산지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사전대비가 필요한 수출기업(30개 사 내외)
- **일시** 2016년 9월 27일(화)~28일(수)
- **장소** 서울 코엑스 3층 320호/321호

| 상담회 주요내용 |

- **유형 1**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지원 컨설팅'
  - 업체현황 및 사후검증 진행사항 파악
  - 검증기관 주요 요청사항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 사후검증 소명자료 검토 및 작성방법 안내
- **유형 2** 원산지 사후검증 '사전대비 컨설팅'
  - 거래현황 및 원산지 관리실태 진단
  - 주요 점검항목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FTA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 자료 제공

| 신청 방법 |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의 '사업참가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대응지원 컨설팅(유형1) 또는 사전대비 컨설팅(유형2) 중 택1 신청
  - 대출서류 첨부 '상담요청서' 작성 후 이메일(simkw@kita.net) 송부
- **신청기한** 2016년 9월 22일(목)까지 (★선착순 마감)
- **참가비** 무료

※ 업체별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

| 문의처 |

- **담당** 한국무역협회FTA원산지지원실
- **연락처** T. 02-6000-8584
- **이메일** simkw@kita.net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에서 삼계탕 수출을 위한 통관제도 이해 기사가 아주 좋았습니다. 삼계탕의 경우 먹는 음식이어서 수출절차가 까다로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양계장부터 가공공장까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더군요. 중국의 수입통관 절차와 검역절차까지 실려 있어서 중국의 통관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길복단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실전 품목분류란의 전동휠 품복분류에 해당하는 기사가 좋았습니다. 최근 길거리나 공원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동휠에 대한 품목분류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관심분야에서 조금 더 지식을 쌓게 되는 기회가 된 것같습니다.
구성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브렉시트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한·영 FTA 추진 시나리오'를 읽고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의 EU 및 영국에 대한 무역정책과 환경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여러 가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대책 등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노재희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남미시장을 밝히는 또 하나의 촛불, 한·콜롬비아 FTA 콜롬비아를 이해한다는 것의 기사가 제목부터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FTA 파트너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상품을 교환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함께하는 FTA

September 2016 / vol.52 www.fta.go.kr

알림

독자엽서를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엽서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적어서 agami2@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E-mail

□□□□□

요 금
수취인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5.3.25~2017.3.25

35736-40003
세종 아름동우체국

받는 사람

〈함께하는 FTA〉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3 0 1 1 8

함께하는 FTA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9월 23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신 소감은?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 은행, 관공서, 도서관 등

〈함께하는 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또는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agami2@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아래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FTA〉 8월호
독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

구성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순정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해 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신진옥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변미선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한순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민선녀 경기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이현희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고영숙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노재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독자엽서 당첨상품 반송 시 1년 간
(우체국 배송자료 보관 시한) 보관합니다.

FESTA

KOREA Sale FESTA

★ 2016 쇼핑관광축제 ★

코리아 세일 페스타

2016 쇼핑관광축제

9.29 - 10.31

www.koreasalefesta.kr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www.motie.go.kr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